



제 3 4 0 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3. 06. 19.(월)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5
제안일자	2023. 05. 31.
회부일자	2023. 06. 02.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2023.3.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04.24. ~ 05.15.(경상북도 공고 제2023-954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및 필요성

-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안 제4조는 공무원 국내 공무원출장의 운임과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¹⁾을 반영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 이는 조례에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별도 규정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상의 불필요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사항

일비 : 20,000원 → 25,000원

식비 : 20,000원 → 25,000원

숙박비 : 서울특별시(70,000원 → 100,000원), 광역시(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50,000원 → 70,000원)

□ 종합의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는 2015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아 매년 상승하는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²⁾
- 이에 2023년 3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임과 숙박비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일비의 경우 2006년 이래로 개정된 적이 없으며, 식비의 경우는 2007년 이래로 개정된 적이 없음.
숙박비의 경우 2015년 이래로 개정된 적이 없음.(2013년에 광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에 관한 실비 사항이 추가됨.)

참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개정 2023. 3. 2.>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